

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

제 안 설 명

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

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,

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,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진정한 의미의 스포츠 복지는 계층,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생동안 스포츠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때 구현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스포츠클럽은 모든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, 이를 통해 엘리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.

이에 스포츠클럽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서울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

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

- 가.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스포츠클럽의 지원에 대한 회계.지도.감독.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,제9조)
- 마.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면 표

창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

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!